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6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이언주 · 김한규 · 허성무
김병주 · 김우영 · 안도걸
박홍배 · 이광희 · 이수진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

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산업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입주할 수 없다.

1.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
3.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4.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제한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해

당하는 시설 외에 별도의 입주 제한 시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u>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u> 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u>산업 활동을 하는 자</u> ----- ----- ----- -----. 14. ~ 23. (현행과 같음)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u>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u> 1. <u>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u>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u>지식산업센터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입주할 수 없다.</u> 1. <u>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이나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u>

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식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

3.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4.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제한되는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와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별도의 입주 제한 시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 first row has a solid top line, while the remaining nine rows have dashed top lines. Each row provides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A small black dot is visible near the center of the fifth row from the top, likely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a stroke or a marker.

1. · 2. (현행과 같음)

3.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